

2026년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공무직근로자(의장 부속실 운영) 채용시험 공고

2026년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공무직근로자(의장 부속실 운영) 채용 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 7. 8.

인천광역시검단구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기간	채용인원	근무시간	담당업무
공무직근로자 (의장 부속실 운영)	근로계약 체결일 ~정년(60세)	1명	1일 8시간, 주 40시간	- 의장 부속실 운영 · 관리 - 일정관리, 방문객 응대 - 행정 · 사무업무 지원

*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채용하지 못하거나,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 면접시험에서의 평정 성적의 차하위자 순으로 선발할 수 있음.

2. 응시자격 기준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서류접수 시 제출서류에 한함

가. 공통사항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자(2008. 12. 31. 이전 출생자)
- 지역제한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있는 자
(*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성별제한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의2(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의2 채용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3. 29.>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신설 2016. 3. 29.>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나. 채용자격기준

채용분야	응 시 자 격
공무직근로자 (의장 부속실 운영)	○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범위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행정 또는 비서 업무 근무경력

-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불인정될 수 있음
-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공기관 ('공공기관 알리오', '클린아이 지방공공기관'에서 확인가능)
- ※ 전일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하고,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주 40시간 기준)

3. 선발방법(서류전형 → 면접시험)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채용자격 요건에 적합한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 응시자가 많은 경우 적정 면접 인원을 고려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를 결정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자질 및 적격성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등급별 점수)로 평가

다. 기타사항

-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 재공고함
-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 ※ 1차 공고 시기 접수한 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재공고 응시원서 접수자로 같음함

○ 동점자 처리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 :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 점수
-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다시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

4.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및 임용
2026.7.8.(수) ~ 7.13.(월)	2026.7.10.(금) ~ 7.14.(화)	2026.7.21.(화) 전후	2026.7.23.(목) 전후	2026. 7~8월중 (추후 공지)

- ※ 채용공고는 검단구의회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
- ※ 면접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공고 예정
- ※ 상기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가. 원서교부 : 검단구의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 나. 접수기간 : 2026. 7. 10.(금) ~ 2026. 7. 14.(화)
- 다. 접수방법 : 방문 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방 문 접 수

-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 채용 담당(의회 1층)
- 접수시간 : 09:00 ~ 18:00 (중식시간 12:00 ~ 13:00 제외)
※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 대리접수자는 접수기간 내에 전화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방문접수 시 구비서류·기재사항 등 미비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등기우편접수

- 우편주소 : (22679) 인천광역시 검단구 독정로125번길 12(검단구청, 의회동)
의회사무과 의정팀 채용 담당자 앞
- 마 감 일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의 우편소인에 한해 유효함
- 응시표는 이메일 송부 예정이며, 면접시험 참석 시 출력하여 지참
(응시원서에 이메일 주소 기재)
- 등기우편 접수자는 접수기간 내에 전화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우편접수 시 구비서류·기재사항 등 미비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6. 보수 및 복무조건

가. 보수 : 2,076,730원/월(근속 1년 미만 기본급)

※ 공무원 임금협약에 따라 지급

※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기타수당 등 별도 / 4대보험 가입

나. 복무조건

구 분	공무직근로자
근무기간	‘근로계약 체결일 ~ 정년(60세)
소 속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근 무 처	의회사무과
근무시간	주 40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
복무기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 지침」 준용
약정해지	업무태만, 근무수행능력 부족, 채용결격사유 발생 시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서식1>

나. 이력서 1부 <서식2>

- A4용지 소정양식으로 본인이 직접 작성, 상단에 연락처 기재
-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기재할 수 없음.

다.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서식3, 서식4>

- A4용지 1~3매 내외, 경력 중심으로 작성

라. 서류전형 제출서류 양식 1부 <서식 5>

마. 경력증명서 1부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공증 필) 첨부
-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근무기간, 직위(급),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 기재)
- ※ 경력증명서 발급 서식에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이 없을 경우 수기로 확인 (날인) 받아 제출
- ※ 관련분야에 해당하는지 모호할 경우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 ※ 재직기간, 인사이동사항, 직위·담당업무 등을 기재한 경력만 인정됨. 기재되지 않거나 서류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 미비로 조치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 인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음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52호, 2021. 2. 16.)

1. 전임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
 - 종전 계약직 및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3년간 전임 근무 : 3년 인정
2.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종전 계약직 및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3.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회(당해 직무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1/2 이상 포함)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인정
 - 외부 전문가 위촉 시에는 응시자와 출신학교, 근무경험 등의 관계가 없는 자로 구성

바.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

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경력확인용)

-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 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증빙 가능한 추가서류 제출

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서식6>

자.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서식7>

차.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현주소, 공고일 이후 발급분)

카.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서식8>

※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양식은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원본에 한하며(수료증 및 위촉장 제외),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함.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9. 기타사항

- 응시자는 채용 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에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각종 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반환이 가능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비용의 경우 응시자 부담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 신체검사 및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는 게시된 소정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 합격자가 채용포기, 합격 취소 등의 사유로 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의회사무과 의정팀(☎ 032-726-7853)